

(第12回一生活環境第4次)

<p>農地의 轉用抑制를 통해서 農地를 保全하는 施策을 最優先課題로 삼고 이를 推進해 온 결과 爲의 自給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p> <p>그러나 UR協商妥結 以後에 農產物의 開放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政府에서는 農地의 轉用抑制施策을 다소 緩和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農業基盤이 造成된 地域은 農業振興地域으로 設定해서 農業에만 利用토록 하고, 農業基盤이 造成되지 않은 地域은 農業振興地域 밖으로 設定해서 農地를 他用途로 利用할 수 있도록 規制를 緩和했습니다. 이러한 規制緩和策의 일환으로 從前에는 農地轉用時에 編入許容基準이라는 것을 定해서 그範圍內에서만 轉用토록 하고, 이것을 超過할 때에는 農地轉用調整審議委員會의 審議 議決을 거치도록 規定되어 있던 農地轉用業務處理審查細部規程을 이번에 農林水產部에서 農地轉用業務處理細部規程으로 全面改正하고 同規程에서 定한 農地轉用業務處理를 위한準則를 廢止했습니다.</p> <p>따라서 앞으로 農地轉用은 轉用의 妥當性에 의해서만 轉用할 수 있도록 農地轉用節次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農地를 他用途로 利用하고자 하는 者의 不便이 解消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年 12月 18日 制定돼서 현재까지 施行하여 왔던 서울特別市農地轉用業務處理審查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廢止하는 데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未備點은 政府에서는 農地의보전및utilization에關한法律施行規則 等에서 무분별한 農地의 轉用을 抑制할 수 있는 裝置를 講究해 놨기 때문에 우리市의 경우 條例를 廉止하더라도 優良農地의 保全은 물론이고隣近農地에 被害를 주는 轉用은 없을 것으로 判斷되고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저희들이 上程한 廉止條例案대로 承認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p> <p>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p> <p>専門委員님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専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p> <p>.....</p>	<p>(報 告)</p> <p>199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이 1994년 9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p> <p>1. 제인의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조례는 농지전용시 전용 허용면적 비율 및 농지전용 협의 요청시의 심사기준과 농지전용 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농지전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운용되었으나, ○정부의 경제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의보전및이해에관한법률시행령”的 개정 (94.4.9.)과 “동시행 규칙개정”(94.6.25.)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的 개정에서 농지 전용 업무처리를 위한 준칙이 폐지되어,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농지전용시 전용허용 면적비율 등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임. <p>2.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전용 절차의 간소화와 농지전용시 행정 규제 완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관련 법령의 개정과 연계하여, 시·도에서 조례제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규정인 “농지 전용업무처리지침제정을위한준칙”이 폐지되므로써 ○현재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농지면적 허용기준과 농지전용 조정심의위원의 운영 등이 필요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p>3. 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20조(94.4.9. 개정)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94.6.25. 개정)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p>4.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조례의 제정근거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 업무의 운용을 위하여 “농지
---	--

(第12回一生活環境第4次)

<p>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713호) 제5조의 규정과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제정을위한준칙”에 근거하여 1990년 12월 18일에 제정된 것입니다.</p> <p>○당초 조례제정 배경에는 농지전용 업무처리에 있어 농지의 전용시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p> <p>○또한 동 폐지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에서 정한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제정을위한준칙”에서 농지편입 허용기준등의 적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p> <p>○정부의 경제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허가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94.4.9.)에 이어, 동 시행규칙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의 개정에서 농지전용 억제기준인 “농지편입 허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 업무를 조례로써 운용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p> <p>○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농지전용 업무는 개정(’94.6.25.)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과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리하여도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이상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p> <p>.....</p> <p>여기에서 결론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農地保全에 관한 法律이 광장히 關聯된 法規가 복잡했습니다.</p> <p>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檢討하는 데 상당히 많은 時間이 所要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條例가 없더라도 현재 改正된 農地의보전및利用에관한法律 및 施行規則에 의해서 전부 다 補完裝置가 되어 있기 때문에 本條例는 廢止되어도 아무런 問題點이 없다 하는 結論을 얻었습니다.</p> <p>그리고 당초에 條例改正의 根據가 어떤 法이나 施行規則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準則의</p>	<p>規定에 의해서 改正되었다는 것이 檢討가 되었습니다.</p> <p>그래서 同 農地編入 許容基準이 廉止되더라도 施行規則과 施行令에 의해서 裝置가 되어 있기 때문에 廉止되어도 아무런 問題가 없다는 것이 檢討되었습니다.</p> <p>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p> <p>○李昌根委員 專門委員한테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p> <p>○委員長 李敏國 그러시지요.</p> <p>○李昌根委員 李昌根委員입니다.</p> <p>방금 專門委員께서 農地轉用業務를 條例로써 運營할 根據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방 다시 이 條例가 廉止되더라도 農地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施行規則과 農地轉用業務處理細部規程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制度가 있다, 그러니까 앞뒤가, 根據가 없다 하고 또 그 다음 얘기하고 二律背反의 檢討報告 내용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p> <p>○專門委員 李贊穆 그래서 이것…….</p> <p>○李昌根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UR 이런 것이 通過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緩和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環境的 次元에서 봤을 적에 꼭 農產物을 우리가 UR의 競爭力보다도 環境的 次元에서 우리人間에게 影響을 주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p> <p>예를 들면 東京 같은 데 가면 都心 복판에 벼가 누렇게 자라고 이런 것을 봄으로써 環境的, 또는 都市民이 곡식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쌀을 아껴서 먹는 그런 教育的 次元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文獻에 의하면 모든 農作物은 38도선 전후에서 農產物, 이런 것이 가장 膳飮價值가 있고 우리 人間에게 좋은 膳飮素를 준다는 것이 文獻에도 많이 記錄이 되고 그랬는데 서울에 그나마 남은 農土를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밤에 몰래 몰래 다 없애고 그랬는 데 條例까지 없어지면 아니 할 말로 우리가 緑</p>
---	--